

# 순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지원센터) 순천대학교 학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공통 국내현장실습수업 운영 지원
2. 학부(과) 개설 현장실습 과목 운영 지원
3. 현장실습 참여 업체 발굴 및 관리
4. 현장실습 학생 상담 및 지도
5.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조직)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센터장은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현장실습 참여 업체의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학생 상담 및 지도, 현장실습 과목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둔다.
- ④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팀장 및 직원을 둔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부단장, 교육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운영 업무 절차 변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타)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 1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